

(앞 쪽)

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적용작업장 (업소·농장) 지정변경신청서				처리기간 7일	
신 청 인	①영업허가(신고·등록)번호		②영업허가(신고·등록)연월일		
	③작업장(업소·농장)명		④전화번호		
	⑤소재지	본사 공장(농장)			
	⑥대표자성명		⑦주민(법인)등록번호		
	⑧관리책임자		⑨주민등록번호		
	⑩HACCP 적용업종 또는 품목				
	변경하고자 하는 사항				
	변경 사유				
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(업소·농장)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					
※ 구비서류 1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적용작업장(업소·농장) 지정서 2.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			수수료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		

210mm×297mm(일반용지) 60g/m²(재활용품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